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스타트업

제품안전

가이드북



Startup Product Safety Guidebook



STARTUP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스타트업 제품안전 가이드북



사업자가 꼭 알고 지켜야 하는

KC인증제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CONTENTS

PART

1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 5
 전안법·어린이제품법 소개 6

PART

2

KC인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KC인증 신청 사전 검토 사항 13
 KC인증 준비사항(인증 신청시 필요한 것들) 15
 KC인증 진행 과정·결과 17
 KC마크 표시 18
 KC인증 면제 22
 법 미준수 시 과태료·벌칙 23

PART

3

KC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

KC인증 절차 27
 KC인증 후 제품안전관리 30

부록

안전관리 대상품목 34
 스타트업지원 관련 인증기관별 연락처 43
 창업지원 관련 46

질의
 답변

자주 묻는 질의답변 49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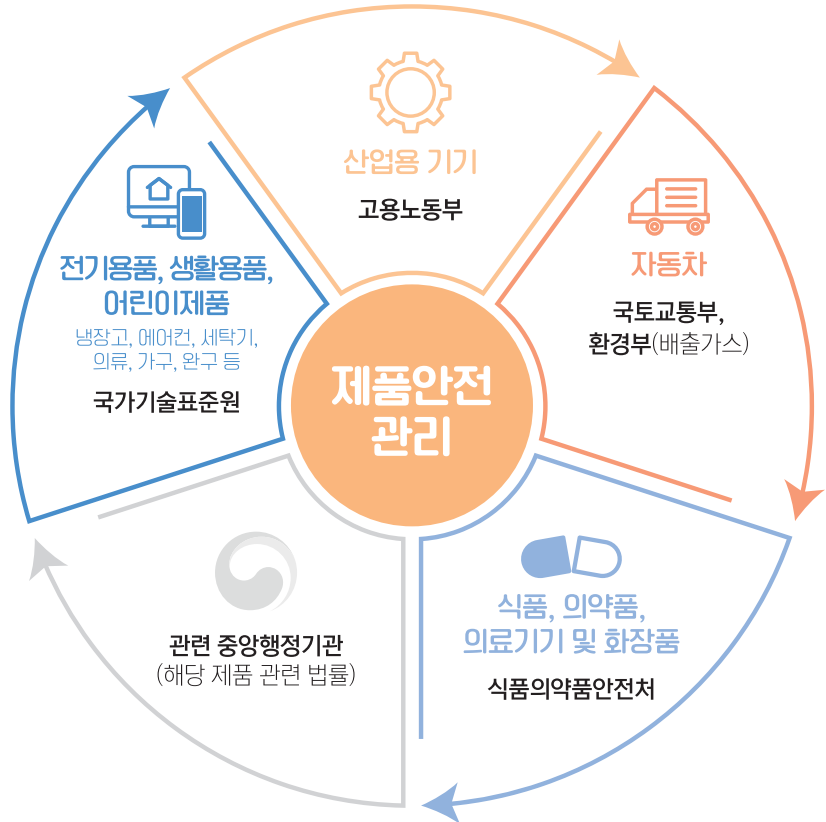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
- 전안법·어린이제품법 소개



제품안전 관리제도 개요

소비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법령)별로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군별 소관부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가이드북은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에 대해 알아보고,
-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KC인증 취득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1381 인증 표준 정보센터 ☎ 1381, www.1381call.kr

전안법, 어린이제품법 소개

가정용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구분	정의
전기용품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부속품 예) 전기청소기, 전열기구, 프린터, 스캐너 등
생활용품	별도의 가공(단순 조립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부속품 예)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구, 모터 달린 보드 등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 부분품·부속품 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유모차 등

전안법

총 245개(전기용품 176, 생활용품 69)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인증절차를 규정·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완료한 제품(안전기준준수품목* 제외)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증거인 KC마크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 전안법 안전관리대상제품 중 위험도가 가장 낮은 품목

어린이 제품법

모든 어린이제품(34개 지정품목 + 기타품목)에 대해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완료한 어린이제품 또한 KC마크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그렇다면
KC마크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KC마크



국내 법정의무인증제도(70여개) 중 23개의 제도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 사용 중(11.1 시행)

〈KC마크 사용 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사례)〉

연 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포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포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수문조사 기기검정	하천법
11	국토교통부	내화구조 인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2	국토교통부	벽체차음구조 인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3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14	환경부	정수기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5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전파법
17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해양환경관리법
20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2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방위사업법
23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검정증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안전관리
수준

위해도에 따라 전안법은 4단계, 어린이제품법은 3단계로 운영 중. 안전관리수준별로 안전성 검증절차를 차등화. 업무 수행기관(안전인증·확인시험 기관 등),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함

위해도	구분 대상 : 279개 품목	정의	절차	마크
<p>높음</p> <p>낮음</p>	<p>안전인증 (45종)</p> <p>전 기 용 품 : 36개 생 활 용 품 : 5개 어 린 이 제 품 : 4개</p>	<p>화재·감전사고, 유해물질 발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p> <p>(전기) 퓨즈, 차단기, 전기매트 등 36개 (생활)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등 5개 (어린이) 어린이용 (돌)놀이기구 등 4개</p>	<p>(안전인증기관) 공장심사 제품시험</p> <p>↓</p> <p>인증</p> <p>↓</p> <p>판매</p>	
	<p>안전확인 (108종)</p> <p>전 기 용 품 : 67개 생 활 용 품 : 26개 어 린 이 제 품 : 16개</p>	<p>화재·감전사고, 유해물질 발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품목</p> <p>(전기) TV, 오디오, 노트북, 전지 등 67개 (생활) 등산용로프, 자전거, 헬스기구 등 26개 (어린이)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16개</p>	<p>(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시험</p> <p>↓</p> <p>신고</p> <p>↓</p> <p>판매</p>	
	<p>공급자적합성확인 (102종)</p> <p>전 기 용 품 : 73개 생 활 용 품 : 15개 어 린 이 제 품 : 14개</p>	<p>화재·감전사고, 유해물질 발생사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p> <p>(전기) 라디오, 전자시계, 앰프 등 73개 (생활) 롤러스케이트, 창문블라인드 등 15개 (어린이) 어린이용 가족제품 안경테 등 14개</p>	<p>(자체/제3자시험) 제품시험</p> <p>↓</p> <p>판매</p>	
	<p>안전기준준수 (23종)</p> <p>생 활 용 품 : 23개</p>	<p>소비자가 사용·취급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p> <p>(생활) 옷, 신발, 장신구, 안경테 등 23개</p>	<p>제품시험 의무없음</p> <p>↓</p> <p>판매</p>	없음

안전인증

안전관리의 가장 상위 단계.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수행 후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 발급

* (45종) 전기용품 36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안전확인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만을 거친 후(공장심사 미 실시)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신고 후 증명서 발급

* (109종) 전기용품 67개, 생활용품 26개, 어린이제품 16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어 기업 자체적으로 시험하거나 외부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가능.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 (102종) 전기용품 73개, 생활용품 15개,
어린이제품(14개 지정품목 + 그 외 공통안전기준 적용품목)

**안전기준
준수**
(18.7, 신설)

안전관리의 가장 하위 단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면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
판매 가능
* 생활용품 23종

● 전기용품의 기본모델-파생모델 구분 예시

모델이란 전기용품·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

〈 기본·파생모델 구분 〉

구분	기본모델	파생모델
특징	①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동일	①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동일
	②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9, 10, 11]에 따른 제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적용 범위가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②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9, 10, 11]에 따른 제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적용 범위 내에서 기능의 부가 또는 삭제, 재질, 모양, 모델명 등이 변경된 모델

〈 (예시) 조명기기(형광등기구)의 파생모델 등록 가능여부 〉

기본모델(A) : 220V, 60Hz, 64W(FLR 32Wx2등용)이고,
파생모델(B) : 220V, 60Hz, 32W(FLR 32Wx1등용)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 ①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 ⇒ **동일하다면 다음 단계 확인**
- ②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9]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범위 내에서 기능의 부가 또는 삭제, 재질, 모양, 모델명 등이 변경된 경우 ⇒ **파생모델 등록 가능**

* 예시는 정격전압(220V) 동일,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32W) 동일, 램프의 수는 기본모델이 2등용이고 파생 모델이 1등용이므로 램프의 수 세부기준(2등용 이하인 것)을 만족하므로 파생모델 등록 가능

제품분류	품목	모델구분	세부기준
11. 조명기기	나. 일반조명기구	정격전압	(2) 150V 초과하는 것
		램프당 광원의 정격입력	(2) 20W 초과 50W 이하인 것
	① 형광등기구	정격전류	(1) 1A 이하인 것
		램프의 수	(1) 2등용 이하인 것
		방수 보호 등급	(1) K 60529에 따른 IP 등급

● KC 인증은 어디에서 받나요?

제품별 종류와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KC인증을 위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릅니다. 이에 KC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대상 제품의 종류와 안전 관리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관련 안전인증·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전기용품	①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②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③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품목별로 시험기관 상이 17개소 주식회사 원택, (주)유씨에스, (주)시티케이, (주)코스텍, (주)디티앤씨, (주)에이치시티, (재)한국조명ICT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케이씨티엘, (주)에스테크, (주)케이이에스, (주)엔씨티, (주)랩티, (주)스탠다드뱅크, 안전인증기관(3개)
생활용품	①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②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③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④FITI시험연구원 ⑤한국의류시험연구원 ⑥KOTITI시험연구원	①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②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③한국자동차연구원 ④안전인증기관(6개 기관)
어린이제품	①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②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③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④FITI시험연구원 ⑤한국의류시험연구원 ⑥KOTITI시험연구원	①한국에스지에스(주) ②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③안전인증기관(6개 기관)

● 안전인증기관

<p>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 대표번호: 1899-7654 ● 홈페이지: http://www.ktc.re.kr
<p>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 대표번호: 080-808-0114 ● 홈페이지: https://www.ktl.re.kr
<p>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대표번호: 02-2164-0011 ● 홈페이지: http://www.ktr.or.kr
<p>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 대표번호: 02-2102-2500 ● 홈페이지: http://www.kcl.re.kr
<p>FITI시험연구원 (FI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 대표번호: 02-3299-8000 ● 홈페이지: https://www.fiti.re.kr
<p>한국의료시험연구원 (KAT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대표번호: 02-3668-3000 ● 홈페이지: http://www.katri.re.kr/kr
<p>KOTITI시험연구원 (KOTI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 대표번호: 02-3451-7000 ● 홈페이지: http://www.kotiti-global.com





PART

KC인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 KC인증 신청 사전 검토 사항
- KC인증 준비사항(인증 신청시 필요한 것들)
- KC인증 진행과정·결과
- KC마크 표시
- KC인증 면제
- 법 미준수 시 과태료·벌칙



KC인증 신청 사전 검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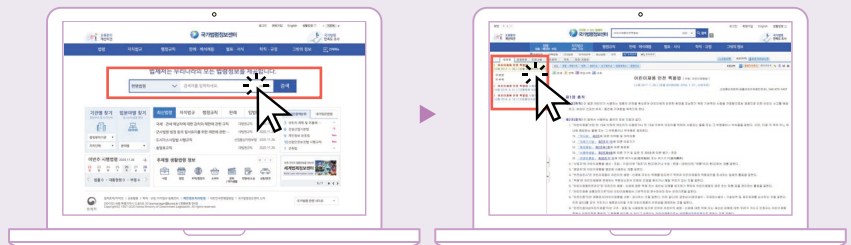
● 우리회사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 제조·수입 제품의 KC인증 대상여부 확인 방법
 - ① 부록 p34 ~ p47
 - ② 전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운용요령 [별표 1~7]
 - ③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검색



법령정보 열람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검색창에서
법명 입력 후 검색

조문 확인 및 하위법령
(시행령 등)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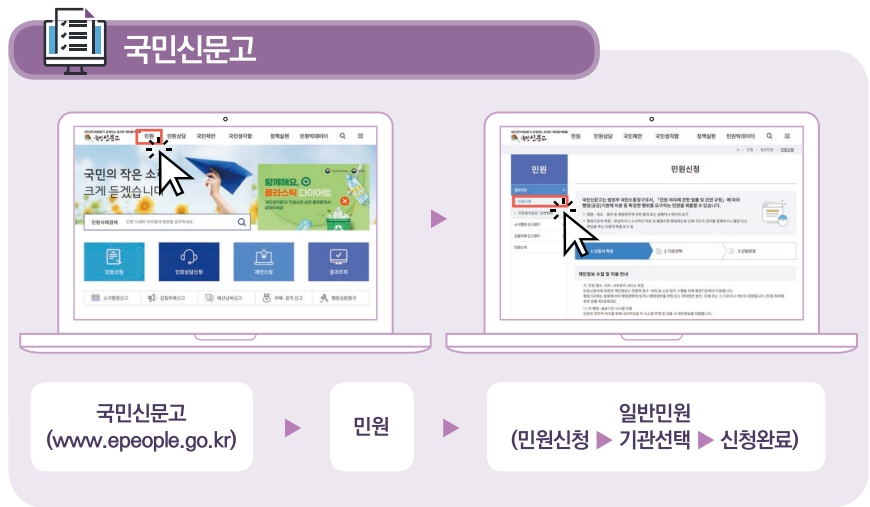
(법명 입력 예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 어린이)

관련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 다만, 제조·수입하는 품목이 관리대상 품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품구조, 기능 및 용도가 관리대상 품목과 동일하면 유사기기로서 인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KC인증 대상여부가 모호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공식 서면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 인증대상 여부 질의 가능합니다.



● KC인증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알아야 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설계(제품개발)단계에서 KC안전기준을 고려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추후 KC인증 과정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발생 등에 따라 제품의 수정·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설계 전 반드시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품별 안전기준이 명시된 행정규칙
전기용품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25] 1~3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3]

- 현재 279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전기준을 고려한 제품개발을 완료하면 제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 인증·확인시험기관에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가 가능합니다.

KC인증 준비사항

KC인증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 및 공장심사 점검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차질 없이 KC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구분	검증방식	관련 업무 기관	필요서류
안전인증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시험·신청) 안전 인증기관	①안전인증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이에 준하는 서류 ③(대리신청)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품설명서 ⑤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전기용품에 한함) ⑥(복수 공장 동일제품 제조)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KC인증 표시 견본 등

안전확인	①제품시험	(시험) 안전확인 시험기관 (신청) 안전인증 기관	①안전확인신고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이에 준하는 서류 ③(대리신청)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품설명서 ⑤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전기용품에 한함) ⑥(복수 공장 동일제품 제조)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KC인증 표시 견본 ⑧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등
공급자 적합성	①제품시험	<전기용품> (시험)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관련 서류 보관 (신고)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②공급자적합성확인서 ③제품설명서(사진포함) ④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 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 등
		<생활용품> (시험)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관련 서류 보관	①공급자적합성확인서 ②제품설명서(사진포함) ③시험결과서(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 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 등

어린이 제품

구분	검증방식	관련 업무 기관	필요서류
안전인증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시험·신청) 안전 인증기관	①안전인증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제품설명서(사진 포함) ④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⑤(대리신청)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안전확인	①제품시험	(시험)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신청) 안전인증 기관	①안전확인 신고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제품설명서(사진 포함) ④제품검사 결과서 등
공급자 적합성	①제품시험	(시험)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관련 서류 보관	①공급자적합성 확인서 ②제품설명서(사진포함) ③제품검사결과서 등

공장심사

- 안전인증만 해당
- KC인증 신청 전 공장 품질시스템의 점검 반드시 필요

구분	행정규칙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17, 18, 27]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 1]

KC안전인증 진행 과정· 결과

● KC인증 신청을 했는데요..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이 궁금합니다.

- 전안법에 따라 KC안전인증을 접수받은 안전인증기관은 45일 이내에 KC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품 시험과정에서 신청자는 처리경과 및 기한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으며,
- 안전인증기관은 인증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업자(신청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KC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중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제품설계의 수정·보완(전기용품의 경우에는 1회)이 가능하며 법정 처리기한인 45일보다 연장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마크 표시

● KC인증을 받으면, 제품에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 KC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품표면 또는 포장에 KC마크와 전안법·어린이제품법·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 표시사항

표시사항

- ①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마크
- ②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③ 모델명
- ④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⑤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 ⑥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 가능한 국내 연락처)
- ⑦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전안법 운용요령 제59조, [별표 23] 참조

👶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표시사항

- ①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마크
- ②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③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
- ④ 개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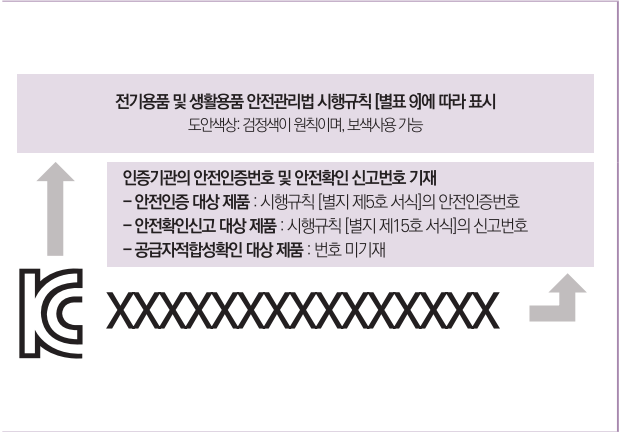
*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9조, 제42조, [별표 7, 8, 11, 12] 참조

- 다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순서대로 알아보을까요?

 전기용품 예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요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에 따른 기타 필요한 표시

모델명	제품별 세부 모델명(제품별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모델번호) * 인증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인증서(안전확인 신고서)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기재
제조업체명 (or 수입업체명)	제조업체명 (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 추가)
제조년월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제조년월, 로트번호,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기재

개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예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모델명	KATS-0000	정격	AC 220V, 60Hz, 100W
제조년월	2020년 12월	전화번호	043-870-0000
제조업체	국가기술표준원	제조국명	(외국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 한함)
수입업체	(수입제품인 경우에 한함)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주회사			



 생활용품 예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요구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표시
도안색상: 검정색이 원칙이며, 보색사용 가능

인증기관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기재

- 안전인증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대상 제품 : 번호 미기재



XXXXXXXXXXXXXXXXXXXX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른 표시사항

제품명	안전기준에 명시된 제품명
모델명	제품별 세부 모델명(제품별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모델번호) * 인증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인증서(안전확인 신고서)의 모델명과 동일하게 기재
제조업체명 (or 수입업체명)	제조업체명 (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 추가)
제조년월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제조년월, 로트번호,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기재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XXXXXXXXXXXXXXXXXXXX

예시

제품명	가스라이터	전화번호	043-870-0000
모델명	KPSA-1100	제조국명	대한민국
제조년월	2021년 2월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제조자명	국가기술표준원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주 소	1. 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 2. 얼굴 등 화상 주의 3. 화재 주의		
사용상 주의사항	4. 50°C 이상 또는 장시간의 일광에 노출시 폭발위험 5. 구멍을 뚫거나 불 속에 던지면 폭발 위험 6. 자동차 실내에 절대 보관금지		

류 어린이제품 예시

- 안전인증 대상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표시 기준과 방법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표시 기준과 방법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표시 기준과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11], [별표 12]에 따라 표시한다.
 도안색상 : (안전인증) 금색 또는 검은색 / (안전확인) 남색 또는 검은색 / (공급자적합성확인) 남색 또는 검은색

- 안전인증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전인증번호
- 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고확인증 번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 미기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제품 주의 경고 표시

⚠ 주의	⚠ 경고	⚠ 경고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세요	 3세 이하사용금지	 3세 이하사용금지 입에 넣지마시오.

예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



제 품 명	완구		
모 델 명	KATS-0000	제 조 년 월	2020년 12월
제 조 자 명	국기기술표준원	수 입 자 명	(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 중국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번 호	043-870-0000	제 조 국 명	대한민국
사 용 연 령	8세 이상		
경 고 문 구	입에 넣고 빨면 안됩니다.		

⚠ 주의	⚠ 경고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세요	 3세 이하사용금지 입에 넣지마시오.



KC인증 면제

● 특수한 경우의 수입·제조시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도 면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전안법과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특수한 경우 안전관리대상제품이어도 면제 확인 신고를 통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가 가능한 조건과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 주요 면제 사유

분류	요건	접수기관
연구·개발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전시회·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안전인증·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장조사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	안전관리대상제품 수입수량의 2.5%이내인 부품을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전기업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 별도 면제신청 불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관련 법령) 전안법 제6조, 제16조, 제24조, 운용요령 [별표 16]

● (어린이제품) 주요 면제 사유

- (면제대상) 연구·개발·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시회·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인 경우
- (접수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
- (관련 법령) 어린이제품법 제18조, 제22조, 제25조

법 미준수 시 과태료·벌칙

● 전안법 및 어린이제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전안법 및 어린이제품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전안법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구분	위반사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칙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받거나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한 자 ② 안전인증·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자 ③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은 자 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⑥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받지 아니하였으나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⑦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대여 또는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 ⑧ 안전인증·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한 자(전안법 제35조제1호·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 제외) ⑨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⑩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⑪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⑫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수입을 대행한 자 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및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⑮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⑯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①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제거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받은 자 ②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③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④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① 정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 안전인증·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 ③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자 ④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⑤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⑥ 전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⑦ 전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②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④ 안전인증·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한 자(전안법 제35조제1호·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 ⑤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사용한 자 ⑥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⑦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⑧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⑨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⑪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⑫ 어린이보호표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⑭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한 자
---------	--

부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법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구분	위반사항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④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확인신고 면제를 받은 자 ⑤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⑥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⑦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⑧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 ⑨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⑩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⑪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자신고를 이유로 피고용인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③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과태료 2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 제출·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p>1천만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한 자 ②수거·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③정기검사·수시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④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⑤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⑥안전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⑦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⑧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송 공무원이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⑨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과 태 료</p> <p>5백만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안전기준 미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자 ⑤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⑥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⑦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⑧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⑨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⑩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⑪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⑫안전인증·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⑬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⑭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⑮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⑯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⑱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⑲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PART

KC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

- KC인증 절차
- KC인증 후 제품안전관리



KC인증 절차

안전인증



1 안전인증대상제품
여부 및 안전기준을
확인하여 제조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예 전기매트

- 대상 여부 확인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1·2·3], 가이드북 부록 34~47쪽
예) 전기매트, 운용요령 [별표 1]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대상 안전기준 확인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25]
예) 전기매트, KC 60335-1, KC 60335-2-17 해당
- 안전기준 열람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안전기준 열람
- 제조 단계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할 경우,
안전인증 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시험 수행 가능



2 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준비

- 서류준비
전안법 시행규칙 [별지 4], 가이드북 15쪽



안전인증기관

3 안전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

- 안전기준 적합 제품 생산 완료 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에
인증 신청
- 안전인증기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진행(45일 이내)

부적합

적합



부적합 사항
통지 (1회)



4 안전인증서
발급

-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인증서 발급



개선후 재시험신청
(전기용품의 경우 1회)



5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

-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

● 안전확인

예 공기청정기

- 대상 여부 확인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1·2·3], 가이드북 부록 34~47쪽
예) 공기청정기, 운용요령 [별표 2]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대상 안전기준 확인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25]
예) 공기청정기, KC 60335-1, KC 60335-2-65 해당
- 안전기준 열람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안전기준 열람
- 제조 단계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할 경우,
안전인증·확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시험 수행 가능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포함),
수입업자

1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 및 안전기준을
확인하여 제조



- 안전기준 적합 제품 생산 완료 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안전확인시험기관

2 안전확인
신청 서류를 준비



3 제품시험
성적서 발급



안전인증기관

4 안전인증기관에
신고서 제출

- 서류준비
전안법 시행규칙 [별지 14],
가이드북 15쪽



5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고

- 안전인증기관이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7일 이내)



6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국내 제조업자에 한함),
수입업자

1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여부 및 안전기준
확인하여 제조



2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신청서 준비
(제3자 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3 지정 시험 및
검사기관 확인 후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검사 신청 또는
자체시험 실시

제3자 시험기관 의뢰 / 자체시험

공급자적합성확인 완료 후 성적서 발급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고 서류 접수
공급자적합성 확인 증명서 발급



4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KC인증 후 제품안전관리

● KC 인증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면, 준비해둔 서류와 함께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확인신고번호를 발급함으로써 안전인증·확인대상제품의 KC인증 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 전기용품·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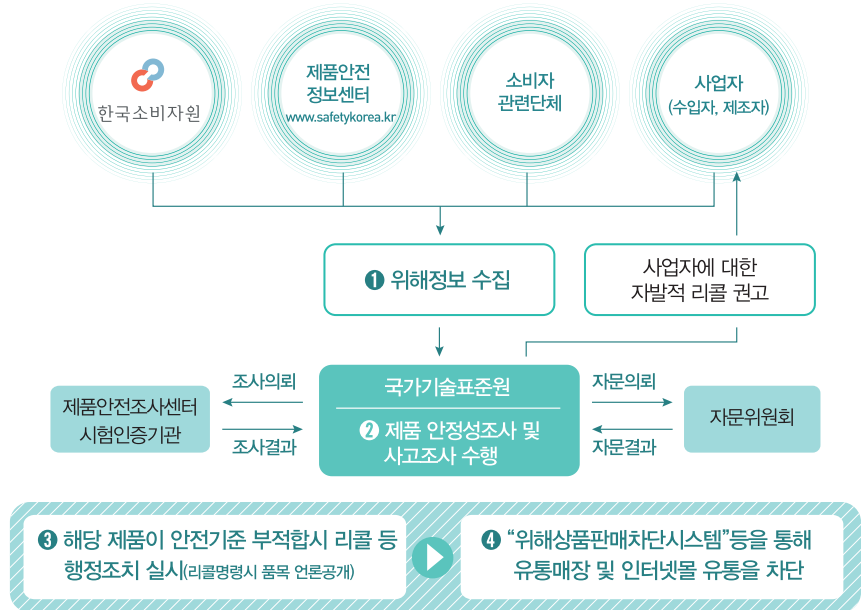
구분	안전관리방법	세부사항
안전인증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 [※] ·제조업자·수입업자) 2년마다 해당 제품·공장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 * 정기검사에 합격해야 KC인증 유지
	자체검사	(제조업자 스스로) 2년마다 실시 - (3년간 자료 보관) ①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②검사 연월일 및 검사장소 ③검사 수량 ④검사 결과
	정기검사 결과 이의제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 신청
안전확인	정기·자체검사	없음
	관련 서류 보관	(최종 제조·통관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①안전확인신고 증명서 ②제품설명서 ③시험 결과서
공급자 적합성	정기·자체검사	없음
	관련 서류 보관	(최종 제조·통관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전기용품 한정) ②제품 설명서 ③시험결과서(시료사진,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 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 사항, 제품시험 날짜·장소,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소속 포함)

류 어린이제품

구분	안전관리방법	세부사항
안전인증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 [※] ·제조업자·수입업자) 2년마다 해당 제품·공장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 * 정기검사에 합격해야 KC인증 유지
	자체검사	(제조업자 스스로) - (3년간 자료 보관) ①제품명 및 모델명 ②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③검사자 성명 ④검사 수량 ⑤검사 결과
	정기검사 결과 이의제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 신청
안전확인	정기·자체검사	없음
	관련 서류 보관	(최종 제조·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①안전확인신고 (변경) 확인증 ②제품설명서(사진포함) ③제품검사결과서
공급자 적합성	정기·자체검사	없음
	관련 서류 보관	(최종 제조·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①공급자적합성 확인서 ②제품설명서(사진포함) ③제품검사 결과서(사진포함)



● (시장출시 후) 제품안전관리제도



안전성 조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구입·조사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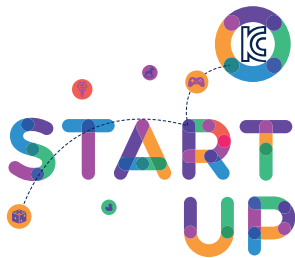
제품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불법·불량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사업자가 유통망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

* (리콜 방식) 수리·교환·환급·파기

문의처 리콜제도 헬프데스크 ☎ 02-6952-4261



부록



안전관리 대상품목

* 최종 품목 분류 현황은 최신 법령을 참조 바랍니다.

안전인증 품목

전기용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 코드세트
전기기기용스위치	스위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스위치, 코드스위치,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조광기, 제어회로용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X·Y 커패시터, 전파장해역제용 전원필터, 형광등용 커패시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기기용접속기류, 상호연결커플러, 플러그 및 콘센트, 케이블릴
전기용품보호용부품	퓨즈	퓨즈, 온도퓨즈
	차단기	기기보호용 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스팀해빙기, 고압세척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기,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 와플기, 핫플레이트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머리인두, 모발말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이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집, 전기강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방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젓병가열기, 요구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온수기, 순간온수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	회전형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전기건조기, 의류관리기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축열식전기난방기, 전기모양 히터, 팻릿 스토브
	전기마사지기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화, 오물흡입기	
가습기	가습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직류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거지대 포함)
	단전지	단전지
조명기기	램프홀더	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일반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투광조명기구, LED조명시스템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램프용자기식안정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LED포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리튬이차단전지

 생활용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타이어용 트레드고무
생활	가스라이터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공기주입물놀이기구, 공기주입보우트,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비비탄 총	청소년용 비비탄 총, 성인용 비비탄 총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솔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솔

 어린이제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수영보조용품(착용형), 수영보조용품(비착용형)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스페이스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충격흡수표면구역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 품목

전기용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자동압력 스위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에너지 레귤레이터
절연변압기	고주파웰더	고주파웰더
	전기용접기	전기용접기, 권총형아크접착기
전기기기	과일껍질깎이	과일껍질깎이
	전기용해기	왁스 용해기, 초코렛용해기, 파라핀 용해기
	이미용기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이발용의자, 전동침대, 전기온열의자, 각도조절의자
	컴프레서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구강청결기	전동치솔, 구강세척기
	해충퇴치기	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전기에어커튼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	팬코일유닛
	폐열 회수 환기장치	폐열 회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기타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수도 동결 방지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발생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온수기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 오존수 발생장치
	전기헬스기구	전기헬스기구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자동차 어댑터
	가정용 전동재봉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용전기어항
	기포발생기	기포발생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전기분무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물수건포장기, 물수건마는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격살충기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전기소독기	

전기기기	제습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전기주온기,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전기 가열기기	납땀인두, 납땀제거인두, 권총형납땀기, 열가스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전동공구	전기욕조	소용돌이욕조, 반신-전신욕조, 발욕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원형톱,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왕복톱, 전기진동기, 전기체인톱, 전기대패, 전기잔디깎이, 전기못총, 라우터,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철판,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디스크플레이어	디스크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오디오시스템
	오디오프로세서	오디오프로세서(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조정 예정)
	영상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조정 예정)
정보·통신·사무기기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내장형 전자철판,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프린터	프린터
	프로젝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천공기
	복사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	디지털TV
	코팅기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노트북컴퓨터, 테블릿PC
	전지	전지
	조명기기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체인형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할로겐등기구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밖의 램프		백열전구, LED램프(모듈), 할로겐전구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생활용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건전지	망간 건전지, 알칼리·망간 전지(L)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 트럭용 타이어,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조차
	디지털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롤러스푸츠 보호장구	롤러스푸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노보드, 부츠, 바인딩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류

생활	스키용구	스키(알파인용), 스키화(알파인용), 스키바인딩(알파인용)
	이륜자전거	일반용자전거, 산악용자전거, 전기자전거,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헬스기구	고정식운동기구, 벤치 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자전거, 스텝퍼, 로잉 머신, 운동용슬라이더,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야외운동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
	운동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롤러스포츠헤드 안전모, 등산용 안전모, 스키용 안전모, 야구용 안전모,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온열팩	온열팩
	수유판드	수유판드
	기름난로 야외 운동기구	기름난로 야외 운동기구
기계금속	빙삭기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
섬유	등산용로프	등산용로프
	스포츠헤드 구명복(부력 보조복)	스포츠헤드 구명복 부력 보조복
건축	미끄럼 방지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용 바닥재	실내용 바닥재

부 어린이제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외의류, 종의류, 내의류,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침대가드,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유아용 노리개젓꼭지걸이,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보호장구,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높은 의자, 유아용 부스터 의자, 유아용 테이블부착식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학용품
	보행기	보행기
	유모차	유모차
	유아용 침대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요람,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침대, 가정용 놀이 울타리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프레임 있는 캐리어, 프레임 없는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헤드 구명복	스포츠헤드 구명복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

전기용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전기기기	감자탈피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 주류 숙성기
	전기사계	전기사계
	적외선·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전기분수기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투영기
	착유기	착유기
	보풀 제거기	보풀 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전기 작동 도어록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
	전동형 롤스크린	전동형 롤스크린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비디오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튜너	튜너
	라디오수신기	라디오수신기
	리시버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음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폰	비디오폰
	음질조절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	AD/DA 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전자시계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턴테이블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모듈레이터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앰프	앰프, 앰프내장형 스피커	

	편집기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영상전송기
	전자약기	전자약기
	스캐너	스캐너
	지폐계수기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어학실습기
	전자철판 및 보드	전자철판, 전자보드
	동전계수기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번호표 발행기, 티켓 발행기, 순번대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기, (HF주파수대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전기(VHF/UHF주파수대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 헤드셋, IP 주소 공유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정보·통신·사무기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A/D 및 D/A 신호변환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재단기	재단기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팩시밀리기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홈오메이션, 비디오모터폰, 기타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금융단말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버스정류장 버스 안내 시스템, 내비게이션, 기타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제분기	제분기, 스테이플러	
조명기기	형광램프용스타터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

 생활용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연질염화비닐호스 폴리염화비닐관
생활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캐비닛에 한정한다)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바퀴달린 운동화	바퀴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가(假) 속눈썹(인조속눈썹)
	쇼핑카트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주택용 사다리 도배용 사다리 월예용 사다리 계단식 소형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킥보드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자동차용 유압식 휴대용 잭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 잭
건축	물탱크	물탱크

 어린이제품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를 포함한다)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를 포함한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 안전기준준수 품목

분류	품목명	세부품목
화학	가죽제품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
생활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캐비닛은 제외한다)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뽕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
	간이 빨래걸이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선글라스
	안경테	안경테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텐트, 난방용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고무신발, 고령자용 염화비닐신발, 고령자용 가죽신발, 고령자용 발포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일자형지팡이, 고령자용 조절식지팡이, 고령자용 접이식지팡이, 고령자용 조립식지팡이, 고령자용 다족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일자형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일자형 지팡이, 접이식 지팡이, 안테나형 지팡이,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우산, 양산, 우산 겸용 양산
	휴대용 경보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 장판지	벽지, 종이 장판지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양탄자	양탄자

스타트업지원 관련 인증기관별 연락처

전기용품

인증기관	품목구분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품목	인증관리센터 (신종욱 센터장)	02-860-1473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전품목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용품보호용부품 제외)	전기제품인증센터 (박민우 센터장)	02-2164-1411
		전기제품인증센터 (한재홍 수석)	02-2164-0133
		전기제품인증센터 (신미옥 수석)	02-2164-0132
		전기제품인증센터 (박명구 수석)	02-2164-0130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전선 및 전원코드	소재부품평가센터 (김유석 센터장)	031-428-7551
	전기기용 스위치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충청중전기평가센터 (윤종경 센터장)	043-299-6601
	절연변압기	소재부품평가센터 (김유석 센터장)	031-428-7551
	전기기기	전기안전센터 (이서호 센터장)	031-428-5606
	전동공구	회전기센터 (최병연 센터장)	031-428-7371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전자안전센터 (이영석 센터장)	031-428-5601
	정보·통신·사무기기	전지분야 전자평가센터 (이창훈 센터장)	
	조명기기	조명기술센터 (조준래 센터장)	031-428-7379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에너지평가센터 (이창훈 센터장)	031-428-3827
	조명기기	조명기술센터 (조준래 센터장)	031-428-7379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건전지, 자동차용 타이어	생활제품인증센터 (정원재 센터장)	02-2164-1440
		생활제품인증센터 (연구석 수석)	02-2164-1427
		생활제품인증센터 (전현주 선임)	02-2164-1424
		생활제품인증센터 (이지영 선임)	02-2164-1437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전품목	KC인증팀 (김하나 책임)	02-2102-2746

인증기관	품목구분	담당자	연락처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물놀이기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스케이트 보드/전동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어린이제품안전센터 (김창민 센터장)	031-428-7347
	자동차용브레이크액	화학분석센터 (정용안 센터장)	031-428-3811
	건전지, 디지털도어록	소재부품평가센터 (김유석 센터장)	031-428-7551
	휴대용 레이저용품	조명기술센터 (조준래 센터장)	031-428-7379
FITI 시험연구원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비비탄총, 등산용 로프, 온열팩, 수유패드, 스노보드, 스키용구, 가구, 침대매트리스	안전인증팀 (이정상 팀장)	02-3299-8061
	실내용바닥재, 스포츠용 구명복, 창문 블라인드, 벽지 및 종이장판지	부품소재사업팀 (조항원 팀장)	043-711-8850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가족제품,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합성수지제품	섬유소비재마케팅팀 (강상욱 팀장)	02-6931-845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인증운영팀 (주영식 과장)	031-596-5781
	등산용 로프, 온열팩, 수유패드	인증운영팀 (홍영전 과장)	031-596-5669
	쌍꺼풀용테이프, 가속눈썹	고객지원팀 (김미희 주임)	02-3668-3035
	가구	부품소재팀 (김찬우 주임, 김은현 연구원)	031-596-5633~4
	침대매트리스, 벽지 및 종이장판지	부품소재팀 (김찬우 주임)	031-596-5634
	그 외 품목	고객지원팀 (김미옥 계장)	02-3668-3033
KOTITI 시험연구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온열팩	제품인증팀 (서용환 팀장)	02-3451-7442
	가정용 섬유제품, 가족제품, 가구, 가속눈썹, 합성수지제품, 선글라스, 안경테,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장신구	섬유생활제품팀 (김채홍 팀장)	02-3451-706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생활제품인증센터 (정원재 센터장)	02-2164-1440
	완구,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유아용 삼륜차,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온열팩, 보행기, 유아용의자	생활제품인증센터 (연구석 수석)	02-2164-1427
		생활제품인증센터 (전현주 선임)	02-2164-1424
		생활제품인증센터 (이지영 선임)	02-2164-1437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전품목	KC인증팀 (김하나 책임)	02-2102-2746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유모차	어린이제품안전센터 (김창민 센터장)	031-428-7347
	어린이용 놀이기구	생활환경평가센터 (최현정 센터장)	031-428-3817

인증기관	품목구분	담당자	연락처
FITI 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완구,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섬유 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어린이용 스키 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어린이용 가구	안전인증팀 (이정상 팀장)	02-3299-8061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섬유소비재마케팅팀 (강상욱 팀장)	02-6931-845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어린이용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인증운영팀 (주영식 과장)	031-596-5781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인증운영팀 (홍영전 과장)	031-596-5669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 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고객지원팀 (이효진 연구원)	02-3668-3072
KOTITI 시험연구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제품인증팀 (서용환 팀장)	02-3451-7442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아동용 섬유제품	섬유생활제품팀 (김채홍 팀장)	02-3451-7066



창업지원 관련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소관부처
사업화 (35건)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실험실 예비창업팀	교육부(교육일자리 총괄과) 과기부(연구성과일 자리정책과)
	K-Global DB-Stars	데이터중심 비즈니스 모델(아이디어) 보유 창업 7년 미만 기업	과기정통부(빅데이터 진흥과)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국내 민간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팀(스타트업)	과기정통부(정보통신 산업기반과)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Hi-Tech Startup)	창업초기 스타트업	과기정통부(정보통신 산업기반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행안부(지역일자리 경제과)
	예술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	예술분야 만39세 미만 예비창업자(팀)	문체부(예술정책과)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 구축지원	예술분야 3년 이하 창업기업	문체부(예술정책과)
	예술분야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	예술분야 3년 초과 7년 이하 법인기업	문체부(예술정책과)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육성 프로그램	콘텐츠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문체부(문화산업정책과)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5년 미만 창업자	문체부(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후속지원 7년 미만)	문체부(스포츠산업과)
	농식품 창업보육지원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농식품 벤처창업 판로지원	농식품 시제품, 서비스 보유 창업 7년 미만 농산업체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농식품분야 액셀러레이터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	예비창업자 창업 2년 미만 기업 재도전 창업자	고용부(사회적기업과)
	해양수산 창업투자기지원센터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해수부(수산정책과)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중기부(기술창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기부(기술창업과)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중기부(기술창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기부(해외시장정책총괄과)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TIPS(R&D)에 선정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기부(기술창업과)
	사내벤처육성	사내벤처팀 및 분사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중기부(기술창업과)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 및 3년 이내 재창업자	중기부(재기지원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기부(창업촉진과)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제조 융복합 업종 영위 창업기업 만 39세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기부(창업촉진과)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CEO 중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기부(창업촉진과)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예비창업자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중기부(소상공인혁신과)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중기부(소상공인혁신과)
	혁신분야 창업패키지(3대 신산업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기부(미래산업전략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관련 스타트업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스타트업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만34세 이하 1인 또는 팀단위 기상기후분야 청년예비창업자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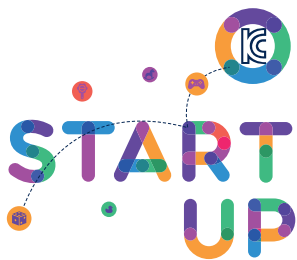
R&D (8건)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ICT분야 창업 5년 이내 법인기업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기반과)
	연구개발특구육성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과기정통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스포츠 창업 촉진 기반기술개발	스포츠분야 창업기업	문체부(스포츠산업과)
	농식품 기술 평가지원	농식품분야 기술기반 자금조달 희망 예비창업자 및 벤처·창업기업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지원	농식품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바이오헬스분야 7년 이하 창업기업	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 7년 이하 기업	중기부(기술개발과)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농업인, 농식품산업체	농진청(연구성과관리과)
창업교육 (12건)	대학 창업교육 체제 구축	전국대학 및 권역 내 초·중등학교 등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학생 창업유망팀 300	전국 초·중·고생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공공기술기반 시장 연계 창업탐색 지원	대학(원)생,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실험실 예비창업팀	과기정통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창업인민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창업 희망 외국인 창업예정자	법무부(체류관리과)
	실전창업교육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중기부(창업촉진과)
	메이커 문화 확산	창작활동 관심 일반인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청소년비즈니스쿨	청소년 및 교사	중기부(벤처혁신기반과)
	대학기업가센터	대학	중기부(벤처혁신기반과)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중기부(소상공인혁신과)
	멘토링플랫폼 운영 지원	3대 신산업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미래차) 창업 벤처기업	중기부(미래산업전략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기부(소상공인지원과)
	IP기반 차세대영재 기업인 육성	중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 영재 선발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시설 공간 보육 (16건)	K-Global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 기업	과기정통부(인터넷진흥과)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지원	빅데이터 기반 예비창업자 등	과기정통부(빅데이터진흥과)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 운영	출판 관련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문체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캠퍼스 혁신파크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에 해당 하는 대학, 산업대학	중기부(벤처혁신기반과) 국토부(산업입지정책과) 교육부(산학협력 정책과)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비)1인 창조기업	중기부(창업촉진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자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스타트업 파크	민간(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관)	중기부(창업정책총괄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판교밸리창업존	예비창업자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민간·공공기관 및 단체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창업기업	중기부(창업생태계조성과)
	장애인기업 창업 보육실 운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중기부(소상공인정책과)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중기부(소상공인혁신과)
	소셜벤처 육성	소셜벤처 육성 희망 민간전문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중기부(벤처혁신정책과)
	광주 스타트업 캠프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창업기업	중기부(창업정책총괄과)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창업기업	중기부(해외시장총괄담당관)

멘토링 컨설팅 (13건)	청년 등 협동조합창업지원	예비창업팀 협동조합	기재부(협동조합과)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과기정통부(정보보호산업과)
	K-Global 창업멘토링 (ICT 혁신기술 멘토링)	ICT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기반과)
	농식품 벤처창업 센터 운영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벤처 · 창업기업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분야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상시근로자 3인 이상 및 매출액 1억 이상 벤처 · 창업기업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농식품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지원	클라우드펀딩 희망 농식품기업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물산업 협력 스타트업 지원	물 관련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환경부(물산업협력과)
	공간정보컨설팅	공간정보 기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기업	국토부(공간정보진흥과)
	공간정보 창업기업 전략캠프	LX공간드림센터 입주기업 및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추천기업	국토부(공간정보진흥과)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여성 예비창업자	중기부(벤처혁신정책과)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기부(소상공인지원과)
	IP 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전환창업 5년 이내 기업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행사 네트워크 (6건)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농식품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2020 환경창업대전	전국민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
	도전! K-스타트업	국내·외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중기부(창업촉진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국내·외 스타트업 및 관계자(VC, 미디어, 정부관계자, 지원단체 등)	중기부(창업정책총괄과)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중기부 (소상공인 혁신과)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중기부 (정책 총괄과)

※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호



질의 답변




자주 묻는 질의답변


제도 일반





1  안전관리대상제품은 KC마크만 표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가이드의 표시방법을 따르고,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표시사항(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KC인증 표시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의 표시사항(마크 외 복수 또는 통합 라벨 등)도 표시해야 합니다.


2  인증기관에 안전인증 신청 후, 처리기간(45일)을 산정할 때 공휴일을 포함하나요?

 안전인증신청의 처리기간 45일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 자율 인증 ④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어떤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나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KC마크, 인증번호 (공급자적합성대상 제품 제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1  DC 전원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찜질기, 전격살충기, 공기청정기 등의 경우 교류전원 30V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등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전안법 운용요령 [별표 1~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USB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가습기가 안전관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USB를 이용하여 직류전원 42V 이하의 입력전원을 사용하는 가습기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습기에 전지가 사용될 경우 해당 전지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므로 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유럽 CE 또는 중국 CCC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에 따라 해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IEC CB인증서(성적서) 제출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험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후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전기용품의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자체시험 또는 시험기관을 통한 제품시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고 자율적으로 KC마크를 제품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



1 **Q** 어떤 것을 어린이제품으로 볼 수 있나요?

A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 아니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 제품 또한 어린이제품이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2 **Q** 어린이제품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사고발생 시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나 콜센터(☎1600-1384)를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Q** 어린이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 통관 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A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 의뢰하여 물품보관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수입 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www.kats.go.kr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스타트업
제품안전
가이드북